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712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정성국·서천호·조경태

유용원 · 진종오 · 이헌승

곽규택 · 김용태 · 조정훈

김예지 • 배준영 • 서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 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 · 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법률 제 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가목 중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한다.

제25조제10항 중 "보호자는"을 "보호자나 피해교원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	
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	
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	
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2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가
민원을 <u>반복적으로</u> 제기하	반복적이거나 교육
는 행위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
	<u>는 방식으로</u>
	_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

한 조치 등) ① ~ ⑨ (생 략)	한 조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①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	
생 또는 그 <u>보호자는</u> 「행정심	보호자나 피해교원
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 </u>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u>.</u>
① (생 량)	(ID (현행과 간음)